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7 호

2007년 6월 8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0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07호(시설공사 입찰공고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08호(시설공사 입찰공고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12호(2007-3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15호(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보상계획 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1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군 사용 사유지 정리))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24호(공시송달(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25호(공시송달(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26호(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627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설비:하수도
결정입안 공람 공고) 3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5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립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6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5블럭)) ...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7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6블럭)) ... 42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8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7블럭)) ... 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9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 44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0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10블럭)) ... 4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1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논현동 562-2번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3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 4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0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4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남동구청, ☎ 453-2660, FAX 453-266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 제안이유

2006.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2007. 2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23조 내지 제30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31조 내지 제33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34조 내지 제39조)

☐ 본 문 : "별첨" 참조

☐ 참고사항 (관련규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중기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5조제8항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제4항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 제9조제3항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 ②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상인조직 등과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림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6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7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개발 등의 사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6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2.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 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화장실·고객지원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구청장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단,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청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35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 · 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07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도림동 산48-1번지일원(오봉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개요
 - 식재공사 : 왕벚나무외 7종 4,626주, 맥문동외 12종 14,213본
 - 시설물공 : 종합 안내판외 12종 292개소 등
- 설계금액 : ₩260,000,000원(추정가액 236,363,640원 부가가치세 23,636,360원)
- 기초금액 : ₩26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6월 05일(화) 09:00 ~ 06월14일(목)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6월 14일(목)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로 우리구의 전자계약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계약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260,000,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 녹지팀(032-453-287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6월 0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08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외 7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개요 : 버스승강대 8개소(교체)설치 공사
 - 설계금액 : ₩79,893,000원(추정가액 72,630,000원 부가가치세 7,263,000원)
 - 기초금액 : ₩79,893,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6월 05일(화) 09:00 ~ 06월 14일(목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6월 14일(목요일)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79,893,000)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7호, 2007. 01. 12)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99.22% 유동비율 133.52%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교통과 대중교통팀(032-453-29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6월 0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12 호

2007-3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코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연번	공매 차수	소 유 자	체납금액	공매물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계인
1	1차	이한건설(주)	34,572,720	27머9362	16,000,000	등록원부 참 조
2	1차	백용현	8,052,770	인천30마2943	500,000	"
3	2차	김영철	1,202,900	인천32거2834	630,000	"
4	1차	김치동	676,140	인천70거5625	2,000,000	"
5	2차	(주)한성지질	11,960,190	인천70라1190	1,800,000	"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7. 6. 5. ~ 2007. 6. 15. 24:00 (11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07년 6월 15일 (금)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7년 6월 18일 (월)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 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준 :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 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 주의 : 입찰신청 후 약 15분정도 지난 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2007. 6. 25.)

-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자.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 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 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기동팀 차량공매담당(032-453-2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15 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보상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내 지장물 및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개요 및 위치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3B-3,4,5,6,7,8,9,10,11LT
 - 규 모 : 주차장 A=2,116.2m²(주차대수 : 약 65대),
4. 보상시기 : 2007. 7월 예정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도시계획과
6. 보상대상
 - 토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3B-3,4,5,6,7,8,9,10,11LT
 - 지 장 물 : 삼화빌라 7개동.

7. 보상방법 :

- 남동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과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 산정.
- 산정된 금액으로 개인별 보상계약을 체결하되, 전체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된 동에 대하여 동별로 일괄 지급.
-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은 보상계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함.(비대상 세입자는 건물주의 책임하에 보상협의 이전에 이주완료 하여야 함)

8.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개별 통지**9. 열람기간 :** 보상계획공고일 이후부터 15일간(공고 게재일 :2007.6.8 예정)**10. 열람장소 :** 남동구청도시계획과**11. 기타사항**

지장물조서등은 남동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 하였으나 ,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 지장물조서 : “첨부서류”(종이문서)

삼화빌라 지장물조사

■ 삼화빌라 1동 (벽돌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평)	대지권㎡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5 (43B/4L)	계	295.81 (89.5평)	174.00 (52.6평)	성명	주 소	
"	"	B01	35.20 (10.6평)	20.7 (6.3평)	오외춘	남동구서창동204-5 삼화빌라 1-지1	국민은행 남동농협
"	"	B02	32.11 (9.7평)	18.88 (5.7평)	강점주	남동구서창동204-5 삼화빌라 1-지2	국민은행 남동농협 전경희
"	"	101	40.26 (12.2평)	23.67 (7.2평)	박인섭	남동구서창동204-5 삼화빌라 1-101	농협중앙회 김금숙 국민은행
"	"	102	37.29 (11.3평)	21.99 (6.7평)	고이순	부평구갈산동171-38 대산로얄빌라21-401	국민은행
"	"	201	40.26 (12.2평)	23.67 (7.2평)	조종순	남동구서창동538 태평a 206-1010	국민은행
"	"	202	37.39 (11.3평)	21.99 (6.7평)	임만수	남동구서창동204-5 삼화빌라 1-202	국민은행
"	"	301	40.26 (12.2평)	19.43 (5.9평)	박기석	남동구서창동204-5 삼화빌라 1-301	국민은행
"	"	302	33.04 (10.0평)	23.67 (7.2평)	김성숙	남구 송의동248-148	

■ 삼화빌라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평)	대지권㎡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7 (43B/11L)	계	291.92 (88.3평)	176.00 (53.2평)	성명	주 소	
"	"	B01	36.49 (11.0평)	22.00 (6.7평)	양소희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B01	국민은행
"	"	B02	36.49 (11.0평)	22.00 (6.7평)	오복덕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B02	국민은행
"	"	101	36.49 (11.0평)	22.00 (6.7평)	김정옥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101	국민은행
"	"	102	36.49 (11.0평)	22.00 (6.7평)	목정분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102	국민은행
"	"	201	36.49 (11.0평)	22.00 (6.7평)	이현숙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201	
"	"	202	36.49 (11.0평)	22.00 (6.7평)	나세균	남동구서창동204-7 삼화빌라 2-202	국민은행
"	"	301	36.49 (11.0평)	22.00 (6.7평)	이소영	서울시동작구상도동 212-63	
"	"	302	36.49 (11.0평)	22.00 (6.7평)	강동현	서울시은평구응암동 365-49	국민은행

■ 삼화빌라 3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m²} (평)	대지권 ^{m²}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8 (43B/10L)	계	297.04 (89.9평)	206.00 (62.3평)	성명	주 소	
"	"	B01	39.40 (11.9평)	27.33 (8.3평)	이천섭	남동구만수동867-13	
"	"	B02	36.76 (11.1평)	25.49 (7.7평)	이정열	남동구서창동204-8 삼화빌라 3-B2	국민은행
"	"	101	39.40 (11.9평)	27.33 (8.3평)	정향숙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401-3주공A109-105	
"	"	102	36.76 (11.1평)	25.49 (7.7평)	임재남	남동구서창동204-8 삼화빌라 3-101	
"	"	201	39.40 (11.9평)	27.33 (8.3평)	조춘월	남동구서창동204-8 삼화빌라 3-201	
"	"	202	36.76 (11.1평)	25.49 (7.7평)	김중선	남동구서창동204-8 삼화빌라 3-202	국민은행
"	"	301	31.80 (9.6평)	22.05 (6.7평)	한성옥	남동구서창동204-8 삼화빌라 3-301	
"	"	302	36.76 (11.1평)	25.49 (7.7평)	전재원	남동구구월동1276-13 다가구주택-101	

■삼화빌라 5동(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m²} (평)	대지권 ^{m²}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9 (43B/9)	계	219.81 (66.5평)	176.00 (53.2평)	성명	주 소	
"	"	B01	28.95 (8.8평)	23.18 (7.0평)	천현식	남동구서창동204-9 삼화빌라 5-B01	국민은행 유승화
"	"	B02	29.70 (9.0평)	23.78 (7.2평)	황병남	남동구만수동1036 진흥A5-606	국민은행 인천수협
"	"	101	28.95 (8.8평)	23.18 (7.0평)	박조향	남동구서창동204-9 삼화빌라 5-101	국민은행
"	"	102	29.70 (9.0평)	23.78 (7.2평)	김종만	남동구서창동204-9 삼화빌라 5-102	국민은행
"	"	201	28.95 (8.8평)	23.18 (7.0평)	박성배	남동구서창동204-9 삼화빌라 5-201	국민은행
"	"	202	23.65 (7.2평)	18.94 (5.7평)	김수경	남동구 서창동 204-9 삼화빌라 5-202	구월남촌 새마을금고 임호준
"	"	301	28.95 (8.8평)	23.18 (7.0평)	김승옥	계양구용종동213-3 조정마을동아A320-2004	국민은행
"	"	302	20.96 (6.3평)	16.78 (5.1평)	김미자	남구송의동2-95 동일A, B-310	

■ 삼화빌라 6동 (벽돌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평)	대지권㎡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10 (43B/5L)	계	276.72 (83.7평)	170.00 (51.4평)	성명	주 소	
"	"	B01	40.58 (12.3평)	24.92 (7.5평)	최우봉	남동구서창동204-10 삼화빌라 6-B01	국민은행
"	"	B02	32.32 (9.8평)	19.86 (6.0평)	황경화	남구용현동627-534 신창A106-401	
"	"	101	40.58 (12.3평)	24.92 (7.5평)	정지순	남동구서창동204-10 삼화빌라 6-101	신한은행
"	"	102	32.32 (9.8평)	19.86 (6.0평)	김순용	남동구서창동204-10 삼화빌라 6-102	
"	"	201	36.62 (11.1평)	22.50 (6.8평)	김현중	남동구서창동204-10 삼화빌라 6-201	
"	"	202	32.32 (9.8평)	19.86 (6.0평)	김남동	남동구서창동204-10 삼화빌라 6-202	
"	"	301	29.66 (9.0평)	18.22 (5.5평)	나양채	광주시 북구양산동288-15 호반A101-1510	
"	"	302	32.32 (9.8평)	19.86 (6.0평)	김범수	서울시관악구봉천동300-19	동원상호 저축은행

■ 삼화빌라 7동 (벽돌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평)	대지권㎡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11 (43B/6L)	계	281.98 (85.3평)	164.00 (49.6평)	성명	주 소	
"	"	B01	35.90 (10.9평)	20.88 (6.3평)	조순호	남동구 서창동51-2	국민은행 한철윤
"	"	B02	36.96 (11.2평)	21.50 (6.5평)	손종석	계양구작전동26-1 뉴서울A202-1402	
"	"	101	35.90 (10.9평)	20.88 (6.3평)	김경숙	서구 가정동5-120 한성A 나-604	범박동새마을 금고
"	"	102	36.96 (11.2평)	21.50 (6.5평)	홍성분	남동구서창동204-11 삼화빌라 7-102	국민은행
"	"	201	35.90 (10.9평)	20.88 (6.3평)	신광민	서울시 중랑구면목동 91-48	국민은행
"	"	202	36.96 (11.2평)	21.50 (6.5평)	서정례	부천시소사구범박동154-2 현대홈타운1단지111-304	국민은행
"	"	301	30.74 (9.3평)	17.87 (5.4평)	차옥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49 신명(아)105/1309	
"	"	302	32.66 (9.9평)	18.99 (5.7평)	유미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A108-404	국민은행

■ 삼화빌라 8동 (벽돌조 슬래브 다세대주택)

동명	지 번	호수	건물면적㎡ (평)	대지권㎡ (평)	소 유 자		관계인
남동구 서창동	204-12 (43B/7L)	계	294.14 (89.0평)	180.00 (54.4평)	성명	주 소	
"	"	B01	32.77 (9.9평)	20.05 (6.1평)	김순실	남동구서창동204-12 삼화빌라 8-B01	국민은행
"	"	B02	40.10 (12.1평)	24.54 (7.4평)	이규봉	남동구만수동1114햇빛 마을벽산A110-1102	국민은행
"	"	101	37.83 (11.4평)	23.15 (7.0평)	임정남	남동구서창동204-12 삼화빌라 8-101	국민은행
"	"	102	40.10 (12.1평)	24.54 (7.4평)	김기수	계양구 계산동954-30	국민은행
"	"	201	37.83 (11.4평)	23.15 (7.0평)	강순임	부평구 십정동436-6 금성A 다-206	국민은행
"	"	202	40.10 (12.1평)	24.54 (7.4평)	차명일	부평구 부개동120-46 백영A101-1604	-
"	"	301	28.81 (8.7평)	17.63 (5.3평)	정수채	남동구서창동204-12 삼화빌라 8-301	국민은행
"	"	302	36.60 (11.1평)	22.40 (6.8평)	허복순	남동구 서창동204-12 삼화빌라 8-302	국민은행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17 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군사용 사유지 정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남동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용재결과 관련된 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0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군 사용 사유지 정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48-2외 13필지 등 21,747㎡중 20,135.92㎡
4. 열람기간 : 2007. 06. 07- 2007. 06. 21
5.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54)
6. 기 타 사 항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으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24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2.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지
식품 소분업	제48호	한가네한과	한상혁	750223-1*****	고잔동 155-28
식품제조 가공업	제86호	엔젤푸드	임봉숙	610917-2*****	간석동 142-13
음식점	간석3-973	나그네	이순자	581115-2*****	간석3동 103-7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청문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제58조
- 식품위생법 제64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07. 7. 2 (월) 10: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기 타 : 청문 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6.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25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6. 8 ~ 2007. 6. 22까지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당 사 자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소재지
일반음식점	간석2-12	주안식당	한정민	6102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5-1
일반음식점	간석2-212	김가네	김정현	710607-1*****	인천광역시 남동 간석동 194-3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전부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 032. 453-2622)

2007. 6.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7- 626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7년 06월 0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6. 08 ~ 2007. 7. 8

2.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내용 : 과태료 부과통지 및 원상복구명령

나.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다.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처분내용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주소지)	원 인			
				차량 번호	적발 일시	적발장소	위반내용
신광호	730301-1*****	3만원 원상복구	논현동560-5 301호	인천70거 9318	07.1.22 13:06	부평구 십정동	후등화착색
유선종	531015-1*****	원상복구 임시검사	구월동1300-20	인천70나 4577	07.2.14 1:26	남구 도화동	전인고리 설치
김태완	660305-1*****	원상복구 임시검사	구월동201-92 명성빌라204	86보3249	07.3.26 14:45	삼산동 인천영선고	엔진개조 승차장치 개조
임명호	470513-1*****	3만원 원상복구	운연동287-2	09고5778	07.3.28 11:10	심곡동 알뜰주방용품	방향등청색
황연출	770217-1*****	39만원 원상복구	간석동37-191 청양빌라 104-301	인천33로 4514	07.3.7 13:51	부평동	방향등청색, 후드업 후등화클리어렌즈, 핸들변경 철제스포일러 소음기변경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저분내용	사용본거지 (주민등록주소지)	원 인			
				차량 번호	적발 일시	적발장소	위반내용
양전목재	120111-0*****	13만원 원상복구	고잔동742-9	46다1517	07.2.27 11:53	남구 관교동	후등화착색, 봉인탈락
장원기업	120111-0*****	10만원 원상복구	논현동320	인천80마 8817	07.3.29 10:31	KBS본관 후문	봉인탈락
김광송	491110-1*****	9만원 원상복구	간석동224-128 한마을빌라 B-202	인천32더 4910	07.3.30 14:50	상봉동 봉황남길48-1	방향등상이, 불법등화 후등화클리어램프
서창식	751220-1*****	6만원 원상복구	남촌동351-21 대길빌라 A-B01	02우4831	07.3.14 15:38	남촌동351-21	후등화착색, 방향등청색
이병삼	711019-1*****	원상복구 임시검사	구월동1107-1 선경주택 B02	02여5249	07.4.9 21:35	광주 엠코코리아 사거리	HID장착
김학수	610707-1*****	3만원 원상복구	남촌동560-4 다솜빌리지 302	인천70너 4307	07.4.4 20:10	고잔동86-13	네온등화
김막례	600326-2*****	6만원 원상복구 임시검사	간석동256-6 청화하이빌 502	73오1691	07.4.24 22:40	인주로1119	불법등화, HID, 방향등청색
유대성	740120-1*****	3만원 원상복구	간석동309-19	04구7139	07.4.19 14:50	제물포매매단지 5층 주차장	방향등 청색
최미경	680923-2*****	원상복구 임시검사	구월동1304-34 포인주택 5-302	04마4182	07.4.24 22:05	구월동 듀크빌 앞	HID설치
김기원	730913-1*****	원상복구 임시검사	만수동1049 담방마을A 103-203	52오7010	07.4.24 22:00	구월동 듀크빌 앞	HID설치
홍영애 외1인	310410-2*****	3만원 원상복구	만수동1043 주공A 905-1304	인천35노 2038	07.4.24 21:43	구월동 듀크빌 앞	등화착색
윤준호	750305-1*****	원상복구 임시검사	논현동603-1 주공A 801-804	인천82나 1196	07.4.25 13:36	역곡동48-6호	격벽및 보호봉 제거
김해일	790815-1*****	10만원 원상복구	구월동349-524 동림홍실빌라 B02	91나5496	07.5.7 10:40	구로본동 중앙하이츠 앞	봉인탈락
김현	770908-1*****	원상복구 임시검사	구월동1132-14 동우메트로피아	33더1375	07.4.24 22:43	구월동 듀크빌 앞	HID 설치

3. 유의사항

가.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07. 7. 8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담당자 ☎032-453-292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627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입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4), 남동구청 건설과(453-2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6. 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환경기초시설(하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폭원)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①	하수도	논현동 33-182	논현동 33-2	동넉1수문 → 서해	96.4m	524㎡	6m
신설	②	하수도	논현동 33-51	논현동 33-2	동넉2수문 → 서해	163.6m	921㎡	6m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4)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위 치 도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5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최소결정일	비 고
기정	도림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림동 249번지 일원	155,99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13호 (2000.6.30)	토지구획 정리사업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6) 건축물에 대한 용도·배치·형태·색채·대지내공지·차량및주차·보행동선·단지내시설물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별표참조]

4. 관계도서 : 붙임(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1/1,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1/1,000

별 표

-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변경없음)
- [별표 2] :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 [별표 3] : 건축물 형태 계획 (변경없음)
- [별표 4] : 건축물의 색채 계획 (변경없음)
- [별표 5]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별표 6]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
- [별표 7]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별표 8]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변경)

용 도	도면 번호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공 동 주 택 용 지	A	차량 동선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로 측단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 시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전용면적 기준(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근린생활 시설용지	B	차량 동선	대로 3-21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와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독 및 다세대 주 택, 종 교 용 지	C D F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통로의 설치를 유도하며 획지 1개소당 최소 3m이상 확보(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 시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함.

※ B용도의 차량동선에 관하여 변경사항

- 당 초 : 단,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 변 경 : 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와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획지는 제외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6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5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5블럭
- 연 면 적 : 185,058.926㎡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40층, 8개동, 1052세대
- 사 업 비 : 411,964,469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6. 25 ~ 2010. 1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7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6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6블럭
- 연 면 적 : 157,120.255㎡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37층, 7개동, 960세대
- 사 업 비 : 328,102,107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6. 25 ~ 2010. 1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8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7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7블럭
- 연 면 적 : 138,323.538㎡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37층, 7개동, 848세대
- 사 업 비 : 290,538,756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6. 25 ~ 2010. 1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9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9블럭
- 연 면 적 : 223,313.928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50층, 6개동, 810세대
- 사 업 비 : 546,356,995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6. 25 ~ 2011. 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30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6. 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10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10블럭
- 연 면 적 : 151,956.967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40층, 5개동, 556세대
- 사 업 비 : 361,056,494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6. 25 ~ 2010. 1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31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논현동 562-2번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453-2903) 및 도시계획과(☎453-2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06.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교통시설(주차장)

【명 칭】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1,234.3㎡(주차대수 4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소래길 88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7. 6. ~ 200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순 번	소 개 지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잔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내용	비 고
					계	계획내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	논현동	562-2	대	1,234.3	1,234.3	1,234.3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계				1,234.3	1,234.3	1,234.3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3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가. 도시지역 : 1제곱미터당 965,000원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 해당없음

2. 적용기간 : 2007년 6월 10일 ~ 2008년 6월 9일